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844호

나. 발 의 자 : 김형재 의원(찬성자 49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2. 제안이유

-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·보수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함(안 제5조제1항제6호의2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(안 제5조)

-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태권도 진흥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의2.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시설 개·보수 지원</u>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동 조례안 정의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“태권도 시설”의 정의를 태권도 수련·경기·연구·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.

- 노후화된 관내 태권도 시설은 역삼문화공원 내 위치한 국기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국기원은 1972년 준공 후 기부채납 되어 현재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소유임.

〈국기원 현황〉

○ 개 원 : 1972. 11. 30.
○ 위 치 :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(역삼근린공원 내)
○ 규 모 : 부지면적 12,600㎡, 연면적 4,612㎡(지하 1층, 지상 3층) - 소유자 : 건물(서울시-공원조성과), 토지(강남구-공원녹지과) ※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('75년, 20년 무상사용)
○ 주요시설 : 본부건물(수련장, 관람석 850석, 사무실), 기념관, 주차장 40면 ※ 방 문 객 : 연 25만명(2022년 기준, 70%가 외국인)
○ 예 산 : 연 250억원(문체부 : 100억원, 자체 150억원 / 직원 : 51명)
○ 주요사업 : 승품·단 심사, 지도자 교육·연수, 시범단 육성 및 공연,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(56개국) 등
○ 운영방식 : 서울시 → 강남구(위임), 강남구 →국기원(민간위탁) - 기간 : 1994.2.12. ~ 현재(1년 단위 재위탁) - 대상 : 태권도장(지하1층,지상3층) 4,220㎡, 식당 및 기념관(지상2층) 392㎡ - 연간 위탁료('23년 기준) : 524,552천원(토지 513,284, 건물 11,268)

- 그 간 국기원 시설 보수지원 요청에 대해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은 자치구(강남구)사무임을 이유로 지원에 등한시 해왔으며,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 관련 사무와 밀접하므로 관련부서인 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옴.
- 또한 관광체육국은 국기원이 공원 내 시설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아 각종 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산관리관이 푸른도시여가국이므로 시설 노후화 관련 보수 비용 지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음.

- 최근 제319회 제3차 본회의(2023.6.14.) 중 시장이 국기원을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협조 요청을 언급하였음.
- 현재도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 시설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정부와 서울시의 태권도시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법적근거는 확보되어 있음.
- 다만 동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정부의 태권도진흥기본계획과 연계·협력하여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붙임 1**집행부 검토의견**의안번호
0844**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김형재 의원 (도시안전건설위원회)	2023.5.3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제안이유> ○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후화된 태권도시설 개·보수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,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보장을 마련 <주요요지> ○ 「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에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태권도 진흥사업 중 하나로 노후화된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·보수 비용 지원을 명시(안 제5조제1항제6호의2)		
추진경과	○ 2023. 5.30. 김형재 의원 발의 - (찬성)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 의원 등(49명)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제6호에 명기된 ‘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’에 ‘노후화된 태권도 시설에 대한 개·보수 비용 지원’으로 상세한 지원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, ○ 태권도법 제8조에서 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개정안의 노후 태권도시설에 대한 개·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○ 서울시가 태권도 진흥정책을 정부의 태권도진흥기본계획과 연계·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태권도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주소연(☎2133-2677)
		담당	김병모(☎2133-2678)